종합건설업 면허제와 건축의 본질

The System of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Permission and Intinsic Nature of Architecture

元鍾一/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by Won, Chong-Ill

건축관련법 환경이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하는 가운데 종합건설업 면허제 논의가 또 다시 줄기차게 대두되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제는 건설업체가 설계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근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부문이 분업화,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건축분야 또한 설계와 시공분야가 분업 전문화의 필연성에 의해 서로 업을 달리하여 발전해온 터인데 돌연히 합병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종합건설업 면허제에 찬성하는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설계정보와 시공정보를 한 시공회사 소유권에 합병하여 시공회사의 정보효율성과 대외 입찰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합병 찬성론이 기존의 분업전문화된 건축분야 분업시스템보다 더 가치있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가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축행위가 설계와 시공분야로 분업·전문화하게 된 역사적 동기와 그 의미를 먼저 확인·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분야의 일을 몇가지로 분업·전문화하게 되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생각된다.

첫째는 행위가 신체의 단순 반복작업이 연결된 형태로써 신체적 동작을 단순 구분적으로 분리시켜 전체적 작업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동기가 있는 경우,

둘째는 행위대상이 매우 복잡하여 행위의 성격을 몇가지로 달리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 목표가 최대로 달성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전체적으로도 그 분야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능력이 최대가 되게끔 하는데 그 동기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산업현장에서 공장의 라인작업 시스템이나 건축현장의 여러 공종으로 분업하는 예로써 전체적인 작업행위의 능률제고에 최대의 목표를 두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일례로 법조계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분업 전문화 형태처럼 똑같이 법행위를 다루는 직업이지만 각각 행위성격을 달리하여 법 행위 취급능률을 제고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둔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정의를 확립할 목적으로 이러한 분업체계를 갖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업동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는 그 동기가 주로 경제성을 목표로 성립된 것이고, 다른 경우는 비경제적 동기로 성립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현재의 건축행위가 설계분야와 시공분야로 분업 전문화하게 된 역사적 동기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건축행위는 여타 분야처럼 인력 수공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동서를 막론하고 거대한 건축물은 인력 수공작업으로서는 최대 최고의 생산품이라는 자부심의 표상이었으므로 모든 역사적 국가들이 서로 다투어 훌륭한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남기려고 노력하였다.

사람의 손길은 곧 예술을 창출하기를 갈망하므로 수공시대의 건축물에는 따라서 예술혼이 보편적으로 깃들여 있었다.

산업혁명이후 수공작업이 기계작업으로 대체되면서 건축현장에 몰아닥친 기계화작업(경제성)에의 욕구와

“
건축행위는 예술작품으로서 또한 국가의 훌륭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가치를 확보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경제적 관점은 건축물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생산 수단으로서만 그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건축의 설계분야와 시공분야가 독자적으로 분업 전문화된 동기는 바로 이와 같이 행위 성격과 관점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건축의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행위능률이나 작업의 경제성에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건축행위의 사회적 기여에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건축의 설계와 시공분야로의 분업은 앞에 거론된 법조계의 분업처럼 명백히 비경제적 동기로 성립된 것이라 하겠다.
”

물질문명향상이라는 시대적 혜택에의 소명은 건축행위에 있어 수공예술만이 참다운 건축예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득세시켰다.

결국 대량생산을 촉발한 산업혁명이후 건축행위에 있어 경제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대두되면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수공예술로서는 최대의 작품형태인 건축의 예술성과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모순을 끌어 안은 채 현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 건축행위의 특성을 역사적인 변천과 함께 잠시 조명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건축은 순전히 경제성을 목표로 하는 단순 반복작업 행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또한 한 국가의 훌륭한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건축행위는 예술작품으로서 또한 국가의 훌륭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가치를 확보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경제적 관점은 건축물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생산 수단으로서만 그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건축의 설계분야와 시공분야가 독자적으로 분업 전문화된 동기는 바로 이와 같이 행위 성격과 관점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건축의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행위능률이나 작업의 경제성에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건축행위의 사회적 기여에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건축의 설계와 시공분야로의 분업은 앞에 거론된 법조계의 분업처럼 명백히 비경제적 동기로 성립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설계와 시공분야 분업전문화에의 역사적 동기와 의미를 확인했듯이 건축행위는 전체적으로 경제성 향상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설계와 시공합병 찬성론이 전적으로 이와같은 경제 효율성 목표를 지향하여 주장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건축본연의 목적과 수단을 도치시키는 몰각무지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선진국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술성을 요하는 건축의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 1인으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한 예로 도쿄부동산, 설계, 시공, A/S 보수 유지관리 그룹 회사가 하나의 그룹회사로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각의 회사는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도 몇몇 대형 설계사무소도 유수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서도 얼마든지 위에 예를 든 도쿄 부동산 회사처럼 콘소시엄 형태로서 대외 건설 경쟁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을 산업디자인 정도로 착각하여 건축의 본질을 몰각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선진국의 예를 더욱 치밀하게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종합 건설업 면허제도의 적용이 국익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토목분야나 플랜트사업 또는 건축물 중 예술성이 문제시 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및 마스타 플랜 등에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